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대한 세부 시행령 공포

2023년 11월 29일 채택된 국회 결의안 제107/2023/QH15호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2025년 8월 29일 시행령 제236/2025/ND-CP호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 (GMT) 규정(소득산입규칙 ("IIR") 및 적격소재지추가세액 ("QDMTT") 포함)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으며, 2025년 10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다국적기업(MNE) 그룹이 각 사업 국가별에서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부담하도록 요구합니다.

적용 대상 기업 (In-scope enterprises)

- MNE 그룹에 속한 베트남 납세자로서,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에서 연간 연결매출이 7억5천만 유로(EUR 750 million)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 본 시행령은 특정 사례에서 수익 기준 산정 방식과 일부 조직의 적용 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검토 대상 회계연도 (Tested fiscal year)

- 검토 대상 회계연도는 MNE 그룹 최종모회사(UPE)의 회계연도(FY)를 의미합니다
- 2024 사업연도의 경우, 2023년 12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가 해당됩니다.

적용 회계기준 (Applicabl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 GMT 규정 준수를 위해, UPE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재무회계기준이 적용됩니다.
-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불일치가 존재할 경우, 해당 내용은 보완하여 추가세액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실효세율(ETR, Effective Tax Rate)

- 국가별로 산정됩니다.
- 조정대상조세 및 Net GloBE 소득은 재무회계 기준 소득 (Financial Accounting Net Income or Loss, "FANIL")을 기반으로 특정 항목을 보정하여 산출합니다
- 국가별 ETR이 15% 미만일 경우, 베트남에서 추가 세액(top-up tax)이 부과됩니다. 또한, 추가세액 산정 시 실질 활동 기반 적용 제외(carve-out) 공식을 적용하여 Net GloBE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text{ETR} = \frac{\text{조정된 Covered Tax}}{\text{Net GloBE 소득}}$$

실질기반제외소득 (SBI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추가세액 산정 시, 결의안 107 호에 따라 실질기반 공제(substance carve-out)를 통하여 Net GloBE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산정 방식: MNE 그룹의 해당 국가별 내 적격 인건비 및 유형자산의 일정 비율(5%)에 근거.
- 전환 기간(2024년부터 9년간) 동안은 인건비 9.8%, 유형자산 7.8%에서 시작하여 5%로 점차 축소됩니다.
- 따라서 인력 및 자본 집약적 기업은 ETR이 15% 미만이라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 시행령은 어떤 항목이 실질 활동 기반 carve-out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세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세액 산출 (Top-up tax computation)

조정대상조세(Adjusted Covered Taxes)
(국가별 단위 산출)

ETR (실효세율)
(국가별 단위 산출)

GloBE 소득 (GloBE Income)
(국가별 단위 산출)

초과이익(Excess Profit)
= GloBE 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

X

Top-up Tax (%)
= 15% 최소세율 - 국가별 ETR

추가세액(Top- Up Tax) = (초과이익 × Top-up Tax %)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추가세액 징수 및 배분 (Collection & Allocation)

- 신고 기업으로 지정된 베트남 내 구성기업(Constituent Entities, "CE")이 추가세액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 QDMTT 규정상, 추가세액의 구성기업간 배분 요구는 없으나, MNE 그룹은 각 구성기업에 배분된 추가세액 금액을 세무당국에 공시해야 합니다.

면제 조항(Reliefs)

의무 면제 (Obligation relief)

결의안 및 시행령의 지침에 따르면 특정 조건 충족 시, 베트남 내 DMTT는 "0"으로 간주됩니다.

(i) 최소 적용 제외 (De Minimis exclusion)

적용조건

- 해당 국가별 GloBE 매출액이 1천만 유로(EUR 10 million) 미만, 그리고
 - 해당 국가별 평균 GloBE 손익이 손실이거나 100만 유로(EUR 1 million) 미만일 것
- 두 항목 모두 3년 평균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의무 면제 (Obligation relief)

결의안 및 시행령의 지침에 따르면 특정 조건 충족 시, 베트남 내 DMTT는 "0"으로 간주됩니다.

(i) 최소 적용 제외 (De Minimis exclusion)

적용조건

- 해당 국가별 GloBE 매출액이 1천만 유로(EUR 10 million) 미만, 그리고
 - 해당 국가별 평균 GloBE 손익이 손실이거나 100만 유로(EUR 1 million) 미만일 것
- 두 항목 모두 3년 평균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ii) MNE 그룹의 국제활동 초기단계에서의 QDMTT 적용 제외

적용조건

- 회계연도 중 어느 시점에서든 관할 국가 수가 6개 이하일 것; 그리고
- 최대 유형자산 보유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가 5천만 유로(EUR 50 million) 이하일 것.

적용 기간

MNE 그룹이 GMT 적용 대상이 되는 첫 회계연도부터 5개 회계연도

예: 2024년부터 GMT 적용 시, 2024~2028 회계연도

적용 대상인 경우, 적용기간은 FY2024 ~ FY2028.

(iii) 전환기 CbCR 세이프하버

MNE 그룹은 아래 테스트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 **소액요건(De minimis test):** 총수익 < 1천만 유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손실) < 100만 유로 (Qualified CbCR 기준);
- **간이 실효세율 테스트 (Simplified ETR Test):** 국가별 간이실효세율 \geq 일정률 (Transition Rate)
 - FY2024: 15%
 - FY2025: 16%
 - FY2026: 17%
- **통상소득 요건(Profit Routine Test):**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 \geq 법인세 차감 전 이익 (Qualified CbCR 기준).
- **순손실 요건 (Net Loss position Test):** Qualified CbCR 기준 손실 발생.

적용 기간: 202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단, 2028년 6월 30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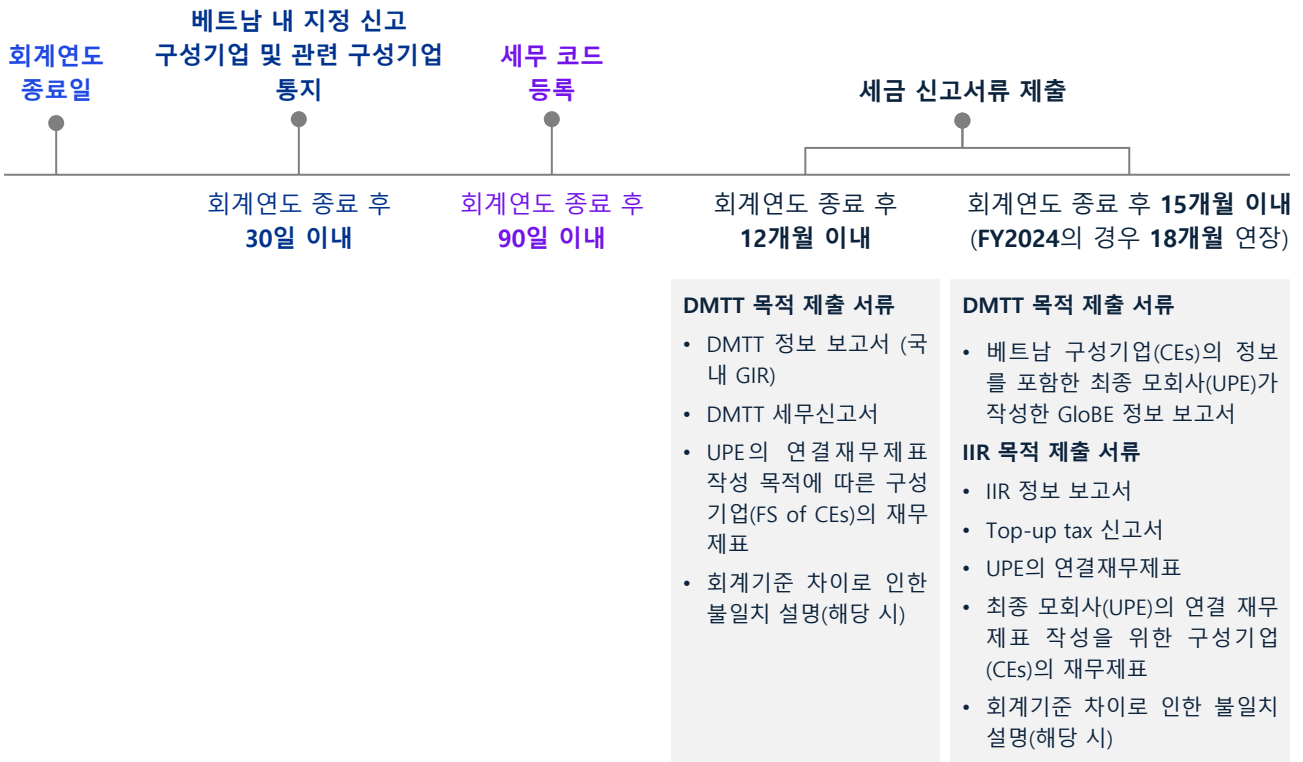
전환기 행정 패널티 감면 (Transitional administrative penalty relief)

초기 단계에서 "soft-landing"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은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전환기 행정 패널티 감면을 허용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내 지정 신고 구성기업 및 관련 구성기업 통지의 지연 제출 또는 미제출
- 세무 코드 등록을 법정기한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연하여 완료한 경우
- 세무신고서를 법정기한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연 제출한 경우
- 세무조사 결정 또는 세무 신고 지연에 따른 세무당국 의견 통보 전까지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이 없고, 납부지연이자도 전액 납부된 경우, 법정기한으로부터 90일 초과 지연 제출 시에도 감면 가능

행정 요구사항/절차 (Administrative Requirements)

시행령에 따라 주요 제출 일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보완되었습니다.



(* 유의사항

- MNE 그룹의 2024 회계연도가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세무 코드 등록 기한은 시행령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지만, 해당 그룹에 적용되는 세무신고·납부 기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별도의 통지, 세무 코드 등록, 세무 신고는 CEs, MOCE 및 MOCE 하위 그룹, JV 및 JV 자회사에도 요구됩니다.
- 모든 통지, 등록, 신고 및 납부는 베트남 세무총국(GDT)에 제출해야 합니다.

KPMG 베트남 의견 (KPMG in Vietnam's observation)

GMT 규정은 특히 베트남 내 관대한 법인세 인센티브를 누리고 있는 MNE 그룹의 현금 세 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이행상의 도전과 행정적 요건(연간 ETR 및 추가세액산정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MT 규정의 시행은 베트남으로 하여금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정책을 재검토하게 만들며, 현행 조세 인센티브 제도는 GloBE 환경에서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결의안 제110/2023/QH15 (2023년 11월 29일)와 시행령 제182/2024/ND-CP (2024년 12월 31일)에서 규정된 투자지원기금(Investment Support Fund)의 발행 및 적용은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특정 우선 산업에 집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KPMG는 귀사가 새로운 규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인사이트와 조언을 제공하여,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ontact us

Email: info@kpmg.com.vn

Korean Desk

Seol Young-Sik (Hanoi)
Director
E Youngsikseol1@kpmg.com.vn

Kang Shinmok (Ho Chi Minh City)
Senior Manager
E shinmokkang1@kpmg.com.vn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Limited, KPMG Tax and Advisory Limited, KPMG Law Limited, KPMG Services Company Limited, all Vietnamese one 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Scan to visit our website: kpmg.com.vn